

디지털 콘텐츠 IP & Assets 연구소 규정

시행: 2022. 06. 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디지털 콘텐츠 IP & Assets 연구소(Digital CONTENTs IP & ASSETs Research Center,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디지털 콘텐츠 IP 및 Assets 관련 제 분야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여러 사회적 이익 충돌이 발생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책적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콘텐츠 IP 및 Assets 관련 제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
2. 디지털 콘텐츠 기반 비즈니스 및 인프라 산업 관련 융복합 연구
3. 디지털 콘텐츠 IP 및 Assets 관련 연구자료 및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4. 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내외 학술 행사 주최 및 주관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2. 디지털 콘텐츠 IP 연구부
 3. 디지털 콘텐츠 자산부
 4. 운영위원회
 5. 자문위원회
- ② 각 부의 구성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②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유관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원)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연구부) ① 연구소는 산하에 다음 각호와 같은 연구부를 둘 수 있다.

1. 디지털 콘텐츠 IP 연구부는 디지털 콘텐츠 IP 정책 및 산업, 디지털 콘텐츠 IP 법제, 디지털 콘텐츠 생산 및 이용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2. 디지털 콘텐츠 자산부는 디지털 콘텐츠 자산 가치 평가 및 NFT 자산 연구를 수행한다.
- ② 각 연구부장은 연구소 구성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조직
 3. 제 규정의 개폐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연구소장 추천
 6. 연구원, 연구조원, 행정요원 등 임명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소의 연구원 중 연구소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구성원) ① 본 연구소에는 「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상임 연구원, 전문 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 등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소 구성원의 구분 및 운영과 인사관리는 본교 「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제11조(직무)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연구소 운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② 연구부장은 해당 연구부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연구원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 ③ 연구원은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논문 발표 시 연구소 소속임을 명기한다.

제12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대외학술연구과제 수주의 수탁금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

제13조(회계) ① 재원에 따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운영하며, 교비 또는 대외과제·용역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제14조(보칙) ① 본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연구소내 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달 내 본교에 귀속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